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256 호 2020. 9. 29.(화)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2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1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65호[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구간 지정 고시]..... 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72호[공유수면 점용·사용협의 고시]..... 1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73호[하천 점용 협의 고시]..... 1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74호[도로 명주소 폐지 고시]..... 17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107호[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 공시]..... 1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109호[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응권 (인)

2020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15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에서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
3.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등)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주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용역을 주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공공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공공갈등영향 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
3.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4.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5.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등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공갈등관리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갈등관리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자료를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부서간 협력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갈등관리 총괄부서에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6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해당 공공갈등과 관련된 부서장, 이해관계인, 전문가로 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9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제20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3조 ~ 제4조)
- 다.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이익의 비교·형량 등(제5조 ~ 제7조)
- 라. 공공갈등영향분석(제8조)
- 마.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심의결과의 반영 등(제9조 ~ 제14조)
- 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등(제15조 ~ 제18조)
- 사.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제19조)
- 아. 갈등관리실태의 평가(제20조)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165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구간 지정 고시

2020년 가을철 및 2021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입산통제구역 지정 사유

- 산불예방, 산림자원보호,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보전 등

2. 입산통제 내역

- 입산통제 구역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새바지산 외 3개산 1,464ha
(※ 산림면적 11,179ha의 13.09%)
- 등산로를 제외한 산림 내 입산통제

3. 입산통제기간 : 2020. 11. 1. ~ 2021. 5. 15

4. 통제방법 : 입산금지구역은 산불방지 기간 내 상시 통제

5. 유의사항

-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산통제 예외사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 (☎052-241-79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지정 현황 1부

□ 등산로 개방구간 지정 현황

권역별	등 산 로		개방여부
	구 간	거 리(km)	
	66개 노선	158.9	
동대산	기령 ~ 대안임도 입구	5.8	개방
	평해사 ~ 신흥재	2.1	개방
	청룡암 ~ 신흥재	2.2	개방
	연지암 ~ 마동재	1.5	개방
	매곡공단 ~ 마동재	1.2	개방
	동대산 ~ 동대산큰재	1.3	개방
	수성마을 ~ 동대산	1.9	개방
	홍골저수지 ~ 무제산	2.1	개방
	원지저수지 ~ 무제산	2.5	개방
	차일마을 ~ 동대산큰재	2.3	개방
	송정저수지 ~ 동대산큰재(좌측)	4.5	개방
	송정저수지 ~ 달령재임도(우측)	2.6	개방
	동대산큰재 ~ 대안마을	7.1	개방
	동대산큰재 ~ 달령재	3.7	개방
	대안마을 ~ 기령	4.3	개방
	신흥사 ~ 신흥재임도	1.4	개방
	기령 ~ 삼태1봉	2.2	개방
	신한디아채 ~ 삼태1봉	2.0	개방
	벽산APT ~ 삼태1봉	2.2	개방
	중산농협 ~ 삼태1봉	2.2	개방
메아리학교 ~ 기령	6.3	개방	
무룡산	양정생활체육공원 ~ 진달래군락지	2.2	개방
	양정힐스테이트 ~ 임도 접점	2.7	개방
	심청골 ~ 성불암	2.6	개방
	양정경로당 ~ 갈매봉	2.4	개방
	무룡산장 입구 ~ 마골산	4.2	개방
	도솔암 ~ 달령재	3.7	개방
	달령재 ~ 달곡마을	2.1	개방
	달령재 ~ 숲속쉼터 ~ 무룡산	2.5	개방
	숲속쉼터 ~ 매봉재 음수대	1.7	개방
	화동못 ~ 매봉재(좌측)	1.9	개방
	화동못 ~ 매봉재(우측)	1.5	개방
	화동못 ~ 무룡임도	1.6	개방
	효문운동장 ~ 매봉재(좌측)	1.3	개방
	효문운동장 ~ 매봉재(우측)	1.2	개방
	상방(두부곡) ~ 매봉재	1.2	개방
	오토밸리 ~ 매봉재	1.5	개방

권역명	등 산 로		개방여부
	구 간	거리(km)	
무룡산	매봉재 ~ 무룡산	1.2	개방
	무룡임도 입구 ~ 무룡산	1.6	개방
	무룡산송신소 입구 ~ 무룡산	1.6	개방
	장등마을 ~ 무룡산	2.2	개방
	강동초등학교 ~ 쉼터	0.7	개방
	정자해수욕장 ~ 쉼터	2.5	개방
	효정고교 ~ 효문산 임도	2.6	개방
	마이스터고교~효문산 임도(좌측)	2.7	개방
	마이스터고교~개천골~효문산임도(우측)	3.3	개방
	아래울동 ~ 효문산 임도	2.5	개방
	물청천 소류지 ~ 금문산	1.2	개방
	황토전 ~ 무룡산장 입구	3.2	개방
동축산	마골산 ~ 염포임도 입구	3.9	개방
	심청골 저수지 ~ 돈문재	1.2	개방
	신전생활체육공원~염포팔각정	1.8	개방
	현대사택 ~ 염포팔각정	2.2	개방
염포산	성내마을 ~ 성내약수터	0.7	개방
우가산	강동축구장 ~ 우가산	2.2	개방
	원오사 ~ 옥녀봉	1.8	개방
	안산고개 ~ 옥녀봉	2.5	개방
천마산	달천임도 ~ 천마산	2.9	개방
	만석골 저수지(우측) ~ 천마산	1.8	개방
	만석골 저수지(좌측) ~ 천마산	1.6	개방
	천마산 정상 ~ 관문성 입구	4.6	개방
	무상사.천마산 접점 ~ 무상사	0.7	개방
	선창골.천마산 접점 ~ 선창골	1.7	개방
	천곡.천마산 접점 ~ 천곡	1.4	개방
	달천아이파크 ~ 천마산	4.7	개방
	달천농공단지 ~ 산불감시초소	2.2	개방

2020년 입산통제구역 지정 내역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지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번지			
계				140필		1,464	
	소계			16필		171	
울산 북구	새바지산	북구	효문동	효문동 산30외 9필지	효문동 산30, 산26, 산24, 산20, 산33-1, 산39, 산38-1, 연암동 산130, 산129	103	
			효문동	효문동 산32-1외 5필지	효문동 산32-1, 산33-1, 산34-1, 산38-1 연암동 산134, 산140-1	68	
	소계			74필지		832	
	무룡산	북구	송정동	화봉동 산48외 6필지	화봉동 산48, 산47, 산49-4, 산49-2, 산35-1, 산26, 산25-1	128	
			농소1동	창평동 산69-1외 12필지	창평동 산69-1, 산65-2, 산65-7, 산46-1, 산39, 산38, 산47, 산48, 산58, 산57, 산52-2, 산55-1, 산49-1	139	
			강동동	어물동 산259외 6필지	어물동 산259, 산261, 산262, 산261-1, 산208-6, 산252-1, 산251	35	
			강동동	어물동 산208-4외 16필지	어물동 산208-4, 산208-6, 산26-1, 산209, 산217, 산219, 산220산, 산229, 산221-1, 산150-4, 산150-24, 산150-20, 산227, 산150-22, 산150-15, 산150-12, 산150-11	152	

		강동동	신현동 산222-2외 5필	신현동 산222-2, 산200, 산204-2, 산167-3, 산167-14, 산169-5	90	
		강동동	무룡동 산159-1외 7필	무룡동 산159-1, 산158, 산155-1, 산150, 산149-1, 신현동 산191-1, 산190	64	
		강동동	대안동 산297외 5필지	대안동 산297, 무룡동 산192, 산195-1, 산195-2, 산129, 산136-2	98	
		강동동	무룡동 산206외 9필지	무룡동 산206, 산213, 산211, 산216, 산218, 산219, 산108, 산109, 산111, 산113	126	
	소계		36필지		405	
	동대산	농소1동	매곡동 산155외 6필지	매곡동 산155, 산147, 산147-1, 산146, 산135, 산141, 산135	34	
		농소1동	매곡동 산42외 7필지	매곡동 산42, 산51, 산49, 산48, 산70-1, 산69, 산17, 산16-1	64	
		농소1동	매곡동 산30외 7필지	매곡동 산30, 산28, 산25, 산24, 산8-5	40	
		강동동	대안동 224외 10필지	대안동 224, 산288-1, 산276, 산288-5, 산278, 산282, 산293-1, 산306-1, 산309, 산313, 매곡동 산124	200	
		강동동	대안동 1110외 1필지	대안동 1110천, 1066-1천	67	

	소계		14필지			56	
	천마산	농소3동	천곡동 산133외 9필지	천곡동 산133, 산144, 산45, 산38-1, 산49, 산30, 산51, 산53-2, 산53-1		33	
		농소3동	천곡동 산53-1외 3필지	천곡동 산53-1, 53-2, 산54, 산55		23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17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0. 9. 24.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오수관로 매설)
3. 점용·사용의 장소 : 달천동 892-30번지 외 1필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일시 : 35m²
 - 영구 : 6.5m²
 - 나. 기 간
 - 영구 : 2020. 9. 24. ~ 2034.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건설과)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173호

하천 점용 협의 고시

「하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천 점용협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상 안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연암동)

3. 점용 목적 및 개요

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점용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달천동 31-4번지

나. 면적 : 일시 4.5㎡

영구 1.5㎡

5. 점용 협의 유효기간

영구 : 2020. 9. 24. ~ 2034. 12. 3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174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아름1길 34-4	어물동 58-1	2020. 9. 29.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9.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1107호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결정·공시일 : 2020년 9월 29일
- 결정·공시 사항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결정·공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1필지 (5개년)
- 열람방법 : 복구 민원지적과 및 구 홈페이지

□ 이의신청

- 기 간 : 2020년 9월 29일 ~ 10월 29일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복구청 민원지적과
-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에 의견가격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 조서
(단위 : 원/m²)

일련 번호	토 지 소재지	기준일	정 정 내 용	
			당 초 결정지가	정 정 결정지가
1	호계동 860-1	2016. 1. 1.	748,500	396,300
		2017. 1. 1.	811,400	429,600
		2018. 1. 1.	856,900	453,700
		2019. 1. 1.	891,700	550,100
		2020. 1. 1.	914,600	516,400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1109호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라 '법정적립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으로 용어 정비(안 제3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개정사항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조례로 정함(안 제5조,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정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고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사항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안전정보과 (우)44248
- 전화번호 : 052-241-7834
- 팩스번호 : 052-241-7899
- E-mail : ckdals7295@korea.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https://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의견서 1부. 끝.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정 적립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복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재난의 예방·대비교육 및 훈련 경비

나. 재난예방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

다. 인명구조장비, 안전장비 등의 확보

라.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다만,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은 구축·운영 할 수 있다.

바. 정밀안전점검 또는 진단결과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보강·철거

사.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아.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자.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차.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카.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울산광역시 북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6조제1항 중 “영 제74조에 따라 지원하는”을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2”를 “제42조”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재난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나. 재난예방 홍보물 및 안내
판 제작
- 다. 인명구조장비, 안전장비
등의 확보
- 라.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 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
설의 보수·보강. 다만, 같
은 조 제9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은 구축·
운영 할 수 있다.
- 바. 정밀안전점검 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 제
거 및 시설물 보수·보강
·철거
- 사.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 아.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
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자.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 차.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
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
한 상담활동
- 카.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
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2. 울산광역시 북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영 제74조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생략)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방재담당 주사가 된다.

④·⑤ (생략)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

② ----- 제42조-----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재난
관리담당 -----.

④·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0. 6. 8.]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전문개정 2010. 6.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 1. 7.]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2017. 1. 6., 2020. 4. 2.>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신설 2017. 1. 6.>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2. 5., 2016. 11. 1., 2017. 1. 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4. 2. 5., 2017. 1. 6.>

[전문개정 2010. 12. 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